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3.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임경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79호로 2019년 2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청소년의 야영 및 수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우리 구 청소년 야영장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기능 및 업무 규정(안 제4조)
- 다. 운영 및 관리위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1조)
- 마. 사용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 바. 운영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제16조)
-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입법예고(2019. 1.17. ~ 2. 7. / 21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청소년야영장의 기능 및 업무, 운영 및 관리위탁, 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승인은 예약순서대로 하며, 이용기간은 2박 3일 이내로 하는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청소년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 또한, 청소년야영장 개원 및 운영에 앞서 청소년야영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3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3.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임경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80호로 2019년 2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기존 조례에 영등포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식지 제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해 제호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우리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종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나. 소식지 제호 변경 시 공모를 거치는 방법으로 변경(안 제2조)
- 다. 소식지 종류별 발행 주기 명시(안 제4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2019. 1. 17. ~ 2. 7. / 21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정 전반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홍보를 위한 반상회보로 활용 중인 영등포구 소식지의 종류 및 명칭, 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 명칭 변경시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소식지의 종류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다양화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소식지 발행일을 현행 반상회날에서 소식지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소식지 게재내용을 구정·의정소식에서 시정·국정소식까지 게재토록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의 명칭변경 등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식지의 종류를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세분화하고 소식지 게재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알 권리 및 문화욕구 충족, 구민참여 확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영등포구 소식지의 품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

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3.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임경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81호로 2019년 2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기부증서의 발급 규정(안 제4조)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 6)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 라.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 심의에 대해 규정

마. 위원회 구성(안 제7조)

-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 3)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 규정(안 제8조~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9. 1.17. ~ 2. 7. / 21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총 12개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기부자 예우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로 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기부자 명단을 부착 보존, 각종 구행사초청,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단 공지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제도를 통해 기부자 예우의 방안으로 명예의 전당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등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부자가 존재하는 바, 향후 타 법률에 의한 기부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하는 등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3.>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

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29.>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

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